

# 수의료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 수의료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국가수의자문회의 위원장 대한수의사회 / 신광순

### 1.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목표

#### (1) 법률 제정의 필요성

##### 1) 수의사 직능과 관련된 사회적 시대적 여건의 변화

- ① 축산업의 비중확대에 따른 수의서비스 수요의 증가 : 질병예방 · 가축방역 · 진료기능의 확대
- ② 동물과 인간관계의 관심증대에 따른 사회적 수요증가 : 반려동물 · 동물보호 · 인간존중 · 환경보존 등
- ③ 국민의 건강지향적 욕구 증대에 따른 공중보건기능의 확대 : 식품 · 의약품의 안전성과 생명 공학 기술의 발달

##### 2) 수의사의 역할증대에 따른 제도적인 정비의 필요성

- ① 수의사의 역할과 권리 및 의무관계에 대한 법률적 정립과 제도화
- ② 축산업 발전 및 임상수의 활동의 기술적 전문성 제고를 위한 수의사 기능의 확대
- ③ 수의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및 전문적 기능 수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
- ④ 정부 기능의 민간기관 위탁관리와 자율적 공공기능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 ⑤ 기타 수의사 역할과 관계되는 필요한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체제의 정비

## (2) 법률 제정의 목표

### 1) 법령의 명칭 조정

- ① 현행 獸醫師法을 추가 보완하여 통합된 獸醫事法(예: 약사법) 또는 獸醫療法(예: 의료법)을 제정하는 방안
- ② 현행 獸醫師法 중에서 수의사에 관한 기본사항은 존치하되, 수의료에 관한 내용은 분리하여 별도의 獸醫療(管理)法을 제정하는 방안

### 2) 국내외 관련법규 수준으로 제정

- ① 국내 : 의료법, 약사법 등의 수준
- ② 국외 : 일본의 수의사법 · 수의료법, 미국의 관련규정 등

## 2. 현행 수의사법의 내용과 개선점

### (1) 현행 수의사법의 조항별 내용

#### 1) 총 칙 (제1장)

수의사법 제1조(목적)를 보면 「이 법은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동법 제3조(직무)를 보면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검사에 종사함을 그 직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밖에도 수의사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ㄱ. “수의사” 라 함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ㄴ. “동물” 이라 함은 소 · 말 · 돼지 · 양 · 개 · 토끼 · 고양이 · 가금 · 꿀벌 · 어패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여기서 대통령령(동법시행령 제2조)으로 정하는 동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노새 · 당나귀
- ② 사육하는 친칠라 · 링크 · 사슴 · 메추리 · 꿩 · 비둘기
- ③ 사육하는 실험용동물
- ④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동물로서 사육하는 포유류 · 조류 · 파충류 및 양서류
- ㄷ. “동물진료업” 이라 함은 동물을 진료(동물사체에 대한 검안 포함)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을 말한다.

근. “동물병원”이라 함은 동물진료업을 행하는 장소로서 개설신고(동법 제17조)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 2) 수의사 (제2장)

- ① 수의사의 면허 (제4조) : 국가시험 합격자
- ② 면허의 결격사유 (제5조) : 정신 질환자 금치산자 등 약물중독자 관련법 위반자
- ③ 면허의 등록 및 타인 대여 금지 (제6조) :
- ④ 수의사 국가시험 (제8조) : 위원회 구성 관리, 관계전문 행정기관 주관
- ⑤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9조) : 대학졸업자 외국 면허자
- ⑥ 수험자의 부정행위 (제9조의2) : 시험의 정지 합격 무효
- ⑦ 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제10조) : 수산질병관리사 제외
- ⑧ 진료의 거부금지 (제11조) : 진료 요구시 거부 불가
- ⑨ 진단서 등 (제12조) : 직접 진료 또는 검안시 교부
- ⑩ 진료부 및 검안부 (제13조) : 기록유지 및 보존(1년간)
- ⑪ 진료 기술의 보호 (제15조) : 진료 행위의 간접 불가
- ⑫ 기구 등의 우선 공급 (제16조) : 필요한 기구 약품 : 기타 시설 및 재료

## 3) 동물병원 (제3장)

- ① 동물병원의 개설 및 신고 (제17조) : 수의사 국가기관 진료업 목적의 법인 대학 비영리법인 (농협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설기준 등
- ② 동물병원의 관리 의무 (제17조의2) : 개설자 직접 관리 종사하는 수의사
- ③ 휴업 폐업의 신고 (제18조) :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
- ④ 공수의의 위촉 (제21조) : 진료 조사연구 예찰예방 건강진단 기타 지시 업무
- ⑤ 공수의 수당 및 여비 (제22조)

## 4) 수의사회 (제4장)

- ① 수의사회의 설립 (제23조)
- ② 수의사회의 설립인가 (제24조)
- ③ 수의사회 지부 (제25조)
- ④ 민법의 준용 (제26조)
- ⑤ 업무의 위탁 (제27조)
- ⑥ 경비 보조 (제29조)

### 5) 감 독 (제5장)

- ① 지도와 명령 및 협조 요청 (제30조) :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보건복지부 ⇒ 농림부장관
- ② 보고 및 업무감독 (제31조) : 수의사회 및 동물병원
- ③ 면허의 취소 및 면허 효력의 정지 (제32조) : 면허 결격자 및 대여자(취소) 품위손상자 명령 위반자(정지)
- ④ 동물진료업의 정지 (제33조) : 업무 미개시자 무자격진료행위시 시설기준미달 시, 기타

### 6) 보 칙 (제6장)

- ① 연수교육 (제34조) : 학교교육의무 등
- ② 면허 취소시의 청문 (제36조)
- ③ 권한 위임 (제37조) : 장관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

### 7) 벌 칙 (제7장)

## (2) 수의사의 권리와 의무

먼저 수의사로서의 권리는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갖는 일반적 권리에 추가하여 수의사이기 때문에 갖는 고유한 권리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사례를 한가지씩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수의료 업무의 독점권

수의사 면허란 원래 일반인에게 금지되어 있는 동물의 진료를 허용한다는 뜻에서 본다면 수의사의 진료 행위는 고유한 독점 행위라 할 수 있다. 즉 수의사 면허가 없는 자에게는 동물의 진료를 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구태여 진료 대상 동물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수의사 이외의 자가 동물을 진료대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동물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동물에 대한 단순한 투약 행위는 생산자 스스로의 구조(자구)행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사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근본취지로 볼 때 현행 수의사법 제17조(동물병원의 개설) 제2항의 규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대상을 ① 수의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③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④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⑤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광범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의사법 제17조의 2(동물병원의 관리의무)제2항에서도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에게도 동물병원의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은 수의사 이외의 자에게도 동물병원 개설과 관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단서규정으로 그 관리권을 그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중에서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협행대로 유지한다 할지라도 동물병원의 관리의무는 수의사의 고유업무로 보아야 한다. 즉 수의사를 동물병원의 관리자로 의무화하거나, 또는 동물진료 행위를 위한 수의사 의무관리제도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이다.

이러한 사례를 인접법률인 의료법 및 약사법과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의료법의 경우 :** 의료기관(병원의원)의 개설(제30조 제1항)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공립병원의 예), 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의 예) 등 공공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2장 제2절에서는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즉 의료기술등(의료행위)에 대한 보호(제12조), 의료기재의 압류금지(제13조), 기구 등의 우선공급(제14조), 진료의 거부금지(제16조), 진단서등(제18조),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제18조의 2), 무면허 의료행위등 금지(제25조)등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조항이 법률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약사법의 경우 :** 약국의 개설등록(제16조)조항에서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약국의 관리의무(제19조) 조항에서 약국개설자(약사)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수의사법상의 차이점을 분명히 비교할 수 있다.

## 2) 수의사 법상의 의무

「수의사법 제11조(진료의 거부금지)」 : 동물진료업을 영위하는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수의사가 부재하거나 질병 등으로 실제적인 진료 행위가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서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지 기분이 좋지 않거나 다소 피로감을 느낀다거나, 잠깐 동안의 외출, 기타 사적인 감정 등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라 할 수 없다. 즉 추상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논하는 것은 위험하며, 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어폐류의 진료 기타 대통령령(대학의 학생, 봉사활동, 자가사육동물등)이 정하는 진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밖에도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출생 및 사산등) 교부의무(수의사법 제12조), 공수의제도

(제21조), 지도와 명령(제30조), 보고 및 업무감독(제31조),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제32조), 동물진료업의 정지(제33조), 연수교육(제34조) 등 수의사에 대한 의무규정 조항은 상당히 많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한마디로 우리 나라 수의사법규는 수의사에 대한 권리와 권익에 대한 규정은 별로 없고, 행정편의 위주의 구시대적인 규정들이라 할 수 있는 수의사에 대한 의무규정만 있는 법률이 아닌가 판단된다.

### 3. 수의료법 제정의 방향

#### (1) 수의사 국가시험 기관의 지정 (수의사법 제8조 보완)

- 1) 시행 주체 : 농림부장관
- 2) 시험 내용 : 동물진료에 필요한 수의학 공중위생에 관한 지식 및 기능
- 3) 시험 관리 기관(보완) : 관계 전문 기관으로 수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시행령 제11조) 규정과,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시행령 제3조)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시험이란 단지 시험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 수의사 인력수급의 조정 및 수의학 교육의 지표를 설정하는 도구로서 활용되어야 만 그 소기의 목적을 다한다고 할수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도 미국등 선진 외국과 같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법인체인 대한수의사회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한다. (예: 의료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4) 예산 보조(신설) : 필요 예산 보조 규정 신설 (예: 의료법 제9조제3항)

#### (2) 면허의 조건 부여 규정 신설 (공의 수의사 제도)

농림부장관은 수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수의료 취약지), 또는 특정 업무 (공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예: 의료법 제11조)

#### (3) 수의료 기술 등에 대한 보호 규정 (권리와 의무) 보완

##### 1) 수의료 기술 등에 대한 보호 (현행 규정 보완)

- ① 수의사가 행하는 의료 기술의 시행(이하 “수의료행위” 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현행 법 제15조 보완)

- ② 수의사는 수의료 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 약품, 기타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 제16조)
- ③ 수의사의 수의료 행위에 필요한 기구 약품, 기타 시설 및 재료는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신설)

2) 수의사 신고 제도의 부활 (99. 3. 31 삭제됨)

- ① 수의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농림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3조 참조)
- ② 수의사의 면허 또는 동물병원 개설 신고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허증 또는 신고증을 생산하여야 한다 (약사법 제71조의2 참조)

#### (4) 수의사 단체에 대한 규정 보완

1) 중앙회 및 지부의 설립 규정 보완 (의료법 제26조 참조)

- ① 수의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수의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2) 회원에 대한 의무 규정 신설 (의료법 제26조 참조)

- ① 중앙회가 설립된 때에는 수의사는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시·도에는 지부, 자치구에는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3) 협조의 의무 규정 신설 및 보완 (의료법 제28조 참조)

- ① 중앙회는 농림부 정관으로부터 수의료 및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중앙회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수의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공제사업 규정의 신설 (의료법 제28조의2 참조)

- ① 중앙회는 회원의 의료 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 등을 위해 공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제 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감독 조항의 부활 (99. 3. 31. 삭제됨)

농림부장관은 중앙회 또는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수의료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협조의 요청에 불응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5) 전문수의사 및 진료과목 표방제도 신설

### 1) 전문수의사제 신설 (의료법 제55조 참조)

- ① 수의사로서 전문수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농림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수의사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 ③ 전문수의사의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진료과목의 표시 (의료법 제36조 참조)

동물병원의 진료 및 전문 과목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6) 수의료 광고등의 규제

### 1) 과대 광고 등의 금지 (의료법 제46조 참조)

- ① 동물병원 또는 수의사는 수의료 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 ② 동물병원 또는 수의사가 아닌 자는 수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 ③ 누구든지 특정 동불병원이나 특정 수의사의 기능 진료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 ④ 수의료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2) 학술목적 이외의 수의료 광고의 금지 (의료법 제47조 참조)

동물병원 또는 수의사라 하더라도 학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수의학 임상수의학적 연구결과, 기능, 약효 또는 진료등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 (7) 기타 추가 보완할 사항

### 1) 현행 연수교육 (법34조) 제도의 보완

- ① 진료를 업무로 하는 수의사는 일정기간 (예: 5년)마다 대학의 부속 시설 또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진료 시설에서 임상 연수를 받아야 한다.
- ② 임상 연수의 실시기간 또는 진료 시설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2) 수의료 제공 체제의 정비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기본 방침

- ① 농림부장관은 수의료를 제공하는 체제의 정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수의료의 제공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 진료 시설의 정비 및 수의사의 확보에 관한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수의료를 제공하는 체제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진료시설 기타 수의료와 관계되는 시설의 상호기능 및 업무의 연계에 관한 기본적 사항
  - 수의료에 관한 기술 향상에 관한 기본적 사항
  - 기타 수의료를 제공하는 체제의 정비에 관한 기본적 사항
- ② 시·도지사는 수의료를 제공하는 체제의 정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진료시설 정비에 관한 목표
  - 수의사의 확보에 관한 목표
  - 체제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상호기능 및 업무 제휴 시설의 내용 및 방침
  - 필요한 기술 연수의 실시 기타 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의료를 제공하는 체제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 3) 농축산 관련 기금의 활용 및 지원 규정 신설 (자금의 융자)

### 4)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참 고 자 료 -****< 의료법 >**

**제23조** (신고) 의료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중앙회와 그 지부) 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설립된 때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그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중앙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와 도(이하 “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의 지부 또는 제5조 단서에 규정한 외국에 의사회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중앙회가 그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 또는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설립허가 등) ① 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회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협조의 의무) 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 및 국민보건의 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의2** (공제사업)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는 회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등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 또는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에 불응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46조** (과대광고등의 금지) ①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 암시적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학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 임상의학적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55조** (전문의)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의료법시행령 >

**제4조**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이상 국가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1. 정부가 설립 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 법인일 것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 연구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일 것
- ③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시험과목등)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시험위원)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 제7조 삭제

**제8조**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①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결정 발표한다.

**제9조의2** (면허증의 교부) 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발표 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그 종별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한다.

**제9조의2** (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면허의 조건)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특정지역”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취약지를 말하고, “특정업무”라 함은 국 공립의 보건의료기관의 업무와 국 공 사립의 보건의학연구기관의 기초의학분야에 속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조건의 이행방법 및 종사명령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